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518호
- 나. 제 출 자 : 이병도 의원(찬성자 23명)
- 다. 제 출 일 : 2023년 2월 6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디자인의 범위에 공공공간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제3호)
- 나.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및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다.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함(안 제21조제6항 및 제7항)
- 라. 시장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규정함(안 제29조)
- 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을 개정함(안 별표 1)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장하고 추가된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절차 및 심의대상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자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p> <p>2. (생략)</p> <p><u><신설></u></p> <p>3.4.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 ⑤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 -----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 -----.</p> <p>2. (현행과 같음)</p> <p>3.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4.5. (현행 3.4와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6조 가이드라인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9조 (생략)</p>	<p>⑥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견이 반영된 최종 디자인을 심의 소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심의 이후 사업 추진 등의 과정에서 최종 디자인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2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p> <p>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p>

나. 검토 내용

(1) 공공디자인의 범위 확장(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공디자인”의 정의에서 그 범위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장하려는 것이고 안 같은 조 제3호에서 ‘공공공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는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의한 개념을 따른 것으로 보임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현행 조례는 당초 서울시(이하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령없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2006.7.19.)」 (이하 도시디자인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다가, 관련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2.3.)」 제정에 따라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음
- 현행 조례는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시 디자인 관련 조례¹⁾의 정의, 원칙, 적용범위, 기본계획 등을 정책에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시 디자인 분야의 기본 및 상위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현재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폐지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추진했던 사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의 범위는 ‘도시공간과 도시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 누리집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목적을 살펴보면 ‘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로 명시하고 있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위 또한 공공시설물로만

1) 서울시 디자인 관련 조례 : 도시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

한정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2019.3.28. 타법폐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위인 ‘공공시설물’ 외에도 공원, 광장 등 도시공간 또는 공공공간의 디자인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 (붙임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사업)

(2) 공공디자인 사업 실효성 강화(안 제8조, 안 제21조)

- 안 제8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조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안 제8조제3호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6조 가이드라인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심의결과 및 시 가이드라인의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1조는 공공디자인 심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심의결과의 반영 사항 제출 및 심의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후 심의결과 반영여부 확인 절차와 제출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공공

디자인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의 결과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의 약 60%가 조건부동의로, 조건부동의 시 해당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된 제출기한이 없음
- 조치계획 또한 장·단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실제 사업 추진시 심의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안 제21조제7항 ‘심의 이후 사업 추진 등의 과정에서 최종 디자인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에서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부터 중대한 변경까지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의 범위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대상 범위는 추후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최근3년) >

연도	구 분		심 의 결 과				
	개최 횟수	안건 수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	유보	의견제시 등
2020년	21회	146건	2건(1.4%)	96건(65.8%)	41건(28.1%)	7건(4.8%)	7건(4.8%)
2021년	20회	138건	5건(3.6%)	85건(61.6%)	39건(28.3%)	9건(6.5%)	6건(4.3%)
2022년	21회	129건	4건(3.1%)	64건(49.6%)	59건(45.7%)	2건(1.16%)	1건(1.1%)
총	62회	413건	11건(2.7%)	245건(59.3%)	139건(33.7%)	18건(4.4%)	14건(3.7%)

(3)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안 제29조)

- 안 제29조는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것으로, 시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목적을 위해 올바른 공공디자인의 방향성과 도시 내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임
- 안 제28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 관계기관에 요청 및 예산·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 별도의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자 함은 타당해 보임

(4)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개정(안 별표1)

- 안 별표1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 시설물 등을 개정한 것으로 보임
- ‘공공자전거, 키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을 추가하는 등 새롭게 생겨난 시설물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시티투어 안내표지판’을 ‘안내표지판’으로, ‘정류소, 택시 표지판’을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는 등 시설물을 포괄화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한정된 공공디자인 심의범위를 확대하여 공

공공간, 공공용품, 시각이미지, 신기술 접목시설물 등의 항목을 추가한 것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목적인 도시경관 향상과 ‘디자인서울 2.0’ 시행에 따른 도시이미지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 등은 하드웨어 디자인의 범위로 이해할 수 있으나, ‘미디어콘텐츠’ 자체를 심의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할 수 있음
- 소관부서에서는 미디어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는 타 위원회와의 차이점으로 ‘콘텐츠의 조화성, 공공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미디어콘텐츠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미디어 작품 또는 홍보물 심의를 통과한 광고물 등이며 그 외의 심의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참고: 미디어 콘텐츠 시설물의 예시 >



< 다른 위원회와의 차이점 >

구분	좋은빛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디어 시설물	미디어 콘텐츠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등)
심의기준	시설기준(조도, 휘도 등)	콘텐츠의 조화성, 공공성 등	홍보문구, 디자인, 슬로건 적용 등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 주요개정사항 대비표 >

분류	현행	개정안
1. 사회기반시설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 타. (생략) <u>< 신설 ></u>	가. ~ 타. (현행과 같음) <u>파.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 (캐노피 포함)</u> <u>하.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u>
도시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 외할 수 있다) 나. ~ 라. (생략)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u>서울시</u>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 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 (생략)	가. 육갑문, <u>나들목</u> 나. (현행과 같음)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u>가. < 삭제 ></u>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가. <u>공공자전거, 자전거보관대, 안내시 설, 키포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u>
2. 그 밖의 시설물		
전기통신 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u>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 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u>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u>CCTV, 통신안테 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u>
정보통신망	<u>가. 종합유선 방송</u> <u>나. 교통량검지기</u>	<u>가.나. < 삭제 ></u>
문화관광 시설	가.나. (생략) 다. <u>시티투어</u>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환경관리 시설	가. ~ 다. (생략) <u>라. 대기오염 전광판</u>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 삭제 ></u>

분류	현행	개정안
교통관련 시설	<p>가. 보행자 안내표지</p> <p>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p> <p><u>다. 정류소</u></p> <p><u>라. 택시 표지판</u></p> <p>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p> <p>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p> <p><u>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u></p> <p>아.카. (생략)</p>	<p>가. 보행자 안내표지</p> <p>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u>정류장, 정류소 포함</u>)</p> <p><u>다. < 삭제 ></u></p> <p><u>라.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u></p> <p>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u>진·출입표지</u></p> <p>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p> <p><u>사. < 삭제 ></u></p> <p>아.카. (현행과 같음)</p>
그 밖의 시설물	<p><u>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u></p> <p>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p> <p>다.라. (생략)</p> <p><u>< 신설 ></u></p> <p><u>< 신설 ></u></p> <p><u>< 신설 ></u></p>	<p>가. <u>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용차 등</u></p> <p>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u>유선장, 도선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u></p> <p>다.라. (현행과 같음)</p> <p><u>마. 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u></p> <p><u>바. 가로 영상문화시설, 미디어폴, 정류장·스마트 쉼터 복합 미디어 시설 등 미디어 콘텐츠 시설물</u></p> <p><u>사. 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등 그 밖의 유사한 것</u></p>
시각이미지	<p><u>< 신설 ></u></p> <p><u>< 신설 ></u></p>	<p><u>가. 공공시각이미지</u></p> <p>나. 픽토그램, 서체, 색 등</p>
미디어 콘텐츠	<p><u>< 신설 ></u></p>	<p><u>가. 미디어 콘텐츠</u></p>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으로 한정되어있던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장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공공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자가 공공디자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와 심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심의결과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규범력을 강화시키며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음. 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가 필요한 변경사항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 개정 또는 방침수립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화하고 도시이미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기존의 하드웨어 시설물 디자인 심의와 달리 미디어콘텐츠 심의는 소프트웨어적 심의 대상이므로,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있는 유사위원회의 심의대상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본 위원회만의 특수성 또는 특정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붙임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제8조제1항)

-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붙임 2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및 조례추진 경과

□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및 조례 추진경과

- '06. 7. 19.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 '16. 8. 4.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6. 9. 30. : 공공디자인의 진흥 표준조례안 시달(문화체육관광부)
- '18. 5. 2.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18. 10. 29.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19. 3. 28.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배경

- 상위법령 없이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도시디자인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설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 서울시 디자인 관련 조례의 정의, 원칙, 적용범위, 기본계획 등 정책 포함
 - ※ 서울시 디자인 관련 조례 : 도시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